

2019년도 제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19. 3. 22.(금요일), 16:00
- 장 소 :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
- 참석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
 - 심의위원 : 강호갑(분과위원장 대행), 정태호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

2. 전차(제2019-17회)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

3. 안건상정 분과위원장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보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·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4. 폐회선언 분과위원장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-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69건(안전번호 제2019-2738호~3031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

Ⅲ. 회의 의사록

1. 개회선언

-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0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

2. 전차(제2019-17회)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

-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: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사이트명과 권리자단체명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
- A 위원 : 해당 사이트명과 권리자단체명은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
- B : 동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정보제공청구 회의록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
- B 위원 : 정보제공청구는 사인 간 법률 분쟁의 사전 절차적 성격으로 「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

- A 위원 : 동의함
-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: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사이트명과 권리자단체명은 비실명 처리하고 정보제공청구는 「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며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

3. 안전상정

o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성원영 전문위원 :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-2738호~3031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369건임
안전번호 제2019-2738호는 블로그 운영자가 현재 일본에서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의 1화부터 9화까지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사안임
-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: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에게 안전번호 제2019-2738호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에 게시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상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(해당 블로그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)검토 보고서 작성 이후 해당 애니메이션의 10화가 추가로 게시되었음
- B : 추가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후에 추가로 게시된 불법복제물은 이번 심의 대상이 아님
금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가결되면, 보호원이 추가된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
- A 위원 : 해당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'도로로'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위원이 이처럼 상세하게 보고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해당 안건은 민원인 신고를 통해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, 민원 건의 경우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고 답변함
- A 위원 : 민원인이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공하는 블로그 전체를 신고한 것인지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맞다고 답변함
- A 위원 : 민원인 신고 이후에 추가로 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블로그를 신고하면 보호원의 온라인대응팀에서 해당 블로그를 조사하여 불법복제물이 전송된 증거를 수집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됨
추가된 게시물은 보호원의 심의 요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작성성이 완료된 후 게시자가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함

- A 위원 : 추가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해당 블로그에 불법복제물이 추가로 게시된 사실을 보호원의 온라인대응팀에 알리겠음
- A :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이의 없음
- B : 동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(불법복제물 제공화면, 파일 다운로드 화면,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)안건번호 제2019-2739호~3031호는 불법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, 영상물 등 저작물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
특히 안건번호 제2019-2921호 게시물은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‘캡틴 마블(2019)’을 제공하고 있음
- A 위원 : 화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인지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파일명과 화질에 비추어 볼 때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보임
- B : 영화 ‘신기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’의 국내 개봉일과 저작권자에 관해 질의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해당 영화는 2018. 11. 국내 개봉하였고, '위너브라더스'가 권리자인 것으로 확인됨
-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: 안전번호 제2019-2738호~3031호는 만장일치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

(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2738~3031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”

4. 폐회 선언

- o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

2019년 제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3. 28.

분과위원장 대행 강호갑

위원 정태호